

2007. 10.

수 신 : 제천시의회의장

제 목 :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

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9회
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불 임 1. 발의의원 서명서 1부.

2.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발의자 : 양순경 의원
(이명준은 날인)
의 4인

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의 안 발의 서명서

의원성명	서명 또는 날인	비 고
양윤미	양윤미	
성명중	성명중	
강현수	강현수	
劉永淑	S,ym-ha	
김영섭	김영섭	

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189
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7. 10.
발 의 자 : 양순경 의원외 4인

1. 제안이유

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동법시행령 조항을 적합하게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동법시행령 규정에 맞게 조정함.

(안 제1조)

- 제1조 중 “제15조”를 “제33조”로 한다.

붙임 1.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 조문 대비 표 끝.

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5조”를 “제33조”로 개정함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<u>제15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의원(이하 “의 원”이라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 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<u>제33조</u></p>